

【 26 】 양주군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5. 10.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건축조례로 규정한 공해공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현재 3미터로 되어 있어 기존에 일반공장으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고 공해공장으로의 변경에 따른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업종의 변경을 할 수 없는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건축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거리를 우리군 조례에 적용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경기도건축조례가 제정(1996. 7. 29. 경기도 조례 제2691호) 시행됨에 따라 시·군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적용의 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건축법의 기준을 일부 완화 적용함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하고자 함. (안 제4조)
-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해공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3미터에서 2미터로 완화하고자 함. (안 제55조 제1호)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 및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의 수와 같게하여 겸직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안 제63조)
- 용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규정을 적용함에 토지에 정착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만 공작물로 준용 적용함으로써 이동식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73조)
-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미비한 사항의 조문 및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6조 8항, 제65조, 제68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건축조례증개정조례 안

양주군건축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초등학교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26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27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2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9호를 삭제 한다.

제36조(건축물의 용도) 제8항 제1호중 “건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중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건축물” 한다.

제55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1호 중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범위
공해공장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3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구성) 제1항 중 “10인”을 “15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65조(회의 등) 제1항 중 “법 제76조의3 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76조의3 제1항”으로 한다.

제68조(회의록 등)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동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3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각시설(토지에 정착되는 시설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양주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위원 명 중 명
※ 불참위원 (명)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안건 1

안건 2

안건 3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간사 (서명)

양주군수 귀하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물)

안건별 심의 의결내용

안건 제 호

□ 주 요 내 용

-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 기재
- 위원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

□ 심의 의결사항

- 회의시 거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 최종 의결된 주요 내용을 기재

양주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내용

1. 안건번호 :

2. 제목 :

3. 심의요지 :

4. 심의결과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제2면)

위원별 의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적용의 완화) ①(생략) 1. (생략) 2. (생략) ②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제4조(적용의 완화) ①(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경기도 건축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7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 ~ 2. (생략) 3. 국민학교 4. ~ 5. (생략)	제17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초등학교 4.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 ~ 2. (생략)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2학교를 제외한다) 4. ~ 13. (생략)	제1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초등학교, -----) 4. ~ 5.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 ~ 2. (생략)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원에 한한다) 4. ~ 10. (생략)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초등학교, ----- ----- -----) 4. ~ 10. (현행과 같음)
제26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 ~ 3. (생략)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5. ~ 14. (생략)	제26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초등학교, ----- ----- ----- -----) 5. ~ 14. (현행과 같음)
제27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 ~ 3. (생략)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5. ~ 13. (생략)	제27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 ----- (초등학교, ----- ----- -----) 5. ~ 13. (현행과 같음)
제2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제28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1. ~ 5. (생략)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및 직업훈련원에 한한다) 7. ~ 14. (생략)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 (초등학교, ----- ----- ----- -----) 7. ~ 14. (현행과 같음)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9. 창고시설(농수산물보관창고 및 상품전시창고에 한한다) 10. ~ 13.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 13. (현행과 같음)
제36조 (건축물의 용도) ① ~ ⑦ (생략) ⑧ (생략) 1. 연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단, 제4종 미관지구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부속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2.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생략)	제36조(건축물의 용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1. ----- ----- ----- -----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2. ----- -- 건축하는 건축물. 3.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5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생략)		제55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현행과 같음)		
대 상	범 위	대 상	범 위	
공해공장, 위험물 제 조소, 위험물 저 장소	3미터 이 상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 는 경우에는 2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 구에 한한다)에서 건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공해공장 2미터 이 상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 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 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 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 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제 조소	3미터 이 상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이상. 다 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 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	

현 행	개 정(안)	
	위험물 저 장소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63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63조 (구성) ① ----- ----- 15인 ----- 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제65조 (회의 등) ① ----- ----- 법 제76조의3 제1항 --- -----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③ (생략) 제68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회의록 등) ①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73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생략) 1. ~ 3. (생략) 4. 소각시설	②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3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소각시설(토지에 정착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